



# 정책현장탐방

•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sup>1)</sup>: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2001년 개소하였다.



장화정 관장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사회, 개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조직구성, 협력기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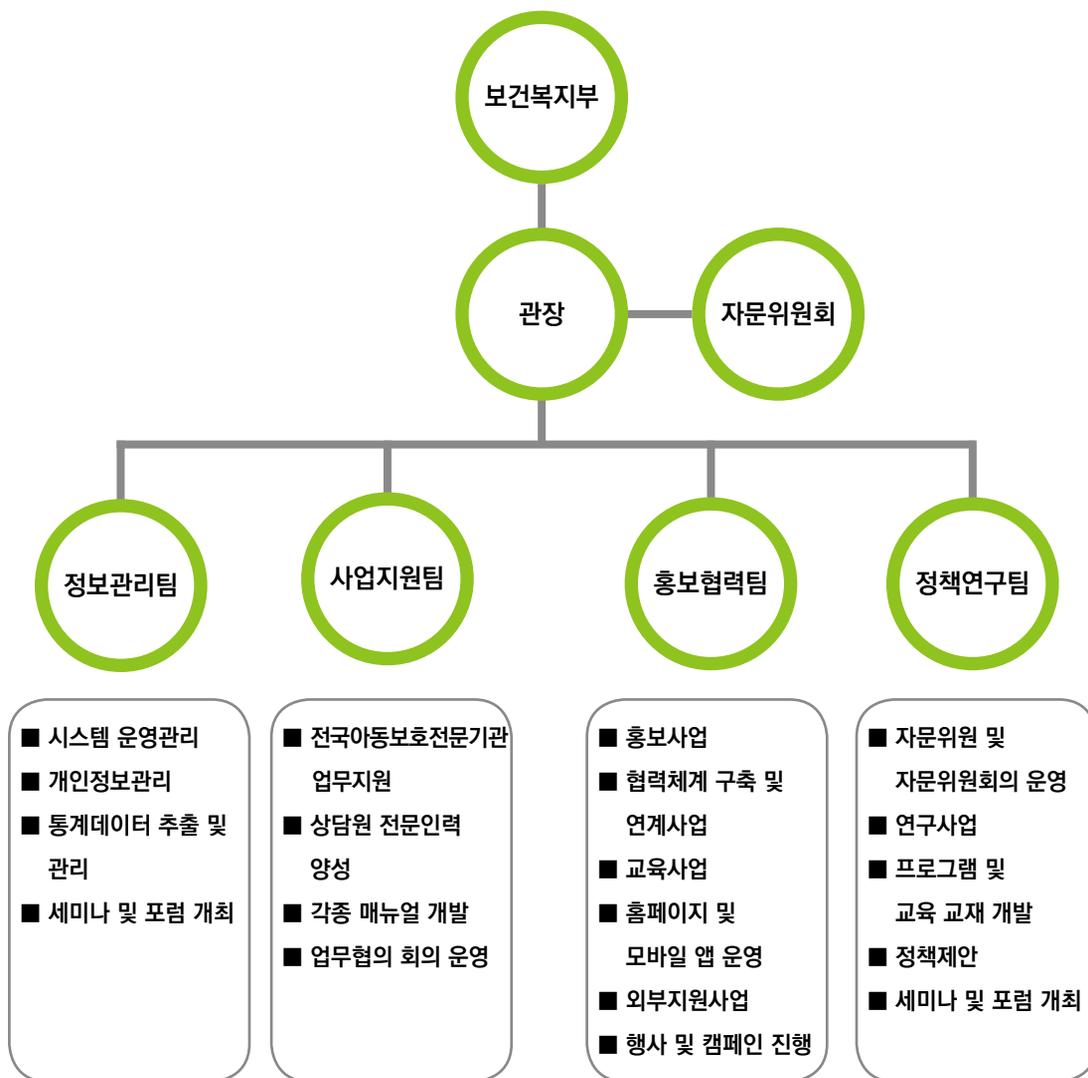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와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20001년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연구 및 자료 발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사업지원팀, 정책연구팀, 홍보협력팀, 정보관리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팀마다 전담업

1)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및 종사자·전문성 역량강화 지원, 국내외 사례 개입을 담당하고 있고, 정책연구팀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홍보협력팀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정보관리팀에서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이후 지역아보전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이 증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상근변호사를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2015년 말부터 미취학,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 내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점검, 일제조사 등 그 동안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한 학대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사례관리 진행 및 현장조사 업무 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초·중학교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 영유아건강검진 및 의료 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여 종결 중인 2013년~2015년 사례에 대한 재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치입니다<sup>2)</sup>. 전국단위의 종합점검과 함께 앞으로 제도와 인프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에 가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sup>3)</sup>. 즉, 신체적·정신적 학대부터 방임유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학대나 방임유기의 경우, 기관의 개입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에 대해 흔히 “몇 대, 무엇으로, 어떻게 체벌”이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절대로 ‘몇 대’, ‘무엇으로’, ‘어떻게’ 등의 기준으로 학대를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은 서로 저마다 다르며, 행위자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량적 체벌 횟수로 규정지어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몇 대, 어떻게”라는 체벌 기준을 둔다 해도 그 이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아동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 9.1명('13), 호주 17.6명('13)인데 비해 한국은 1.10명('14년), 0.73명('13년), 0.57명('10년)으로 낮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히 “범죄”이며,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해,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4)</sup>.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에게 갑자기 일방적인 폭행을 가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체벌이 발전하여(폭력의 에스컬레이팅 효과) 아동학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훈육의 행위보다 훈육의 결과가 아이에게 어떠한 해를 가져왔는가를 두고 폭넓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개입의 근본적인 목표는 원가족 기능회복으로 아이가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체벌보다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가정을 교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어떤 형태이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서학대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징후로서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가 있구요. 행동 징후로서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 또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아동의 보호자들은 훈육 중에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거나, 가족 내 왕따,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정서학대를 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유형 중 비신고의무자(사회복지관관련종사자, 경찰, 부모)의 신고가 71%로 신고의무자(교사, 전담공무원, 관련기관종사자)의 신고 2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까닭은 무엇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분노출’, ‘업무상 방해 우려’, ‘아동학대 징후를 몰라서’, ‘제도를 알지 못하

<sup>4)</sup> 아동복지법 제 5조(보호자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5.9.29.>

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되는 직군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제도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신고자의 신분노출 혹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진술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아동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정 내 아동 학대나 폭력에 대한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는 최근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은폐되고, 감추어져 온 사회적 주요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시스템이 정비되어 가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신고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내 주변, 내 이웃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범죄신고번호 112 혹은 착한신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